

의안 번호	991
----------	-----

2022. 3.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준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
----------	-----

제출년월일 : 2022. 3. 4.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단순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참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관련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한다.

제4조(「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며,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영 제34조제2항”을 “영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의 개정)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한다.

제6조(「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하며,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하고,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1조(「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2조(「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3조(「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4조(「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5조(「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9조(「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

례」의 개정)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23조(「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제24조(「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

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5조(「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7조(「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 ----- 제21조제1항----- ----- ----- ----- 18세 ----- -----.</p>

제2조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체결방법) ① (생략)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체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 -----.</p>

<p>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 -----.</p>
<p>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한다.</p>	<p>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 -----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 ----- -----.</p>
<p>제3조(심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p>	<p>제3조(심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34조제3항----- -----.</p>

제5조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 ----- ----- ----- -----.</p>

제8조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창원시청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제9조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제10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제11조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제12조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5. (생략)</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7조----- ----- -----</p> <p>3. ~ 5. (현행과 같음)</p>

제13조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생략)</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p> <p>1. 「지방자치법」 제102조----- ----- -----</p> <p>2. (현행과 같음)</p>

<p>1. ~ 3. (생략)</p> <p>4. “기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정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p>
---	--

제17조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 ----- ----- ----- ----- -----.</p>

제18조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 진해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p>

제19조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지방자치법」 제16조----- -----.</p> <p>2. ~ 5. (현행과 같음)</p>

제20조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시설”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p> <p>2. ~ 8.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p> <p>2. ~ 8. (현행과 같음)</p>

제21조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 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영 제4조 제10항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 ----- ----- 「지 방자치법」 제159조 ----- ----- ----- -----.

제22조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유치, 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 ----- ----- -----.

제23조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56조 ----- ----- ----- -----.

<p>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 -----.</p>
---	---

제24조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p>

제25조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소방사무”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p>	<p>제2조(정의) ----- -----.</p> <p>1. ----- ----- ----- ----- -----.</p> <p>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p>

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항----- ----- -----
-----------------------------------	--------------------------

제26조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개인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 ----- ----- ----- 「지방자치법」 제117 <u>조</u> ----- ----- ----- ----- ----- -----

제27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53 <u>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u> ----- ----- ----- ----- ----- ----- -----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

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

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지방의회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위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